

보도자료





| 보도 | 2024.8.27.(화) 조간 | 배포 | | | 2024.8.2 | 6(월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금융감독원 | 책임자 | 팀 | 장 | 김종호 | (02-3145-8880) |
| |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| 담당자 | 선 | 임 | 양길남 | (02-3145-8735) |
| 담당부서 | 보험개발원 | 책임자 | 실 | 장 | 문성연 | (02-368-4343) |
| | 자동차보험실 자동차보험팀 | 담당자 | 팀 | 장 | 성원명 | (02-368-4048) |
| | 손해보험협회 | 책임자 | 부 | 장 | 김영산 | (02-3702-8590) |
| | 자동차보험부 자동차보험팀 | 담당자 | 팀 | 장 | 김형일 | (02-3702-8591) |

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른 피해자 구제 강화 및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

〈 주요 내용 〉

- (피해자 구제 개요) '24.8.14.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
 - ※ '09년부터 금감원,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운영하던 업무가 법정화되어, 보험업계 TF운영을 통해 세부방안 마련
- ◈ (피해자 구제 강화 내용) 고지기한 단축, 고지방법·환급절차 표준화
- **보험계약자 등**에 대한 피해발생 사실의 **고지기한**을 **단축**
- 회사별로 최대 30일 **→ 15 영업일 이내**로 **운영**
- 보험회사의 **피해사실 고지방법을 표준화**
- 고지횟수 기준 부재(통상 2회) → 최소 4회 이상 고지
- 유선 위주의 고지 → **유선, 문자, 이메일**로 **고지방식**을 확대
- 연락두절시 조치 부재 → 변경주소 확인(행안부) 후 재고지
- 부당 할증보험료 **환급절차 표준화**
- 계약자 환급 동의 후 기한 없이 환급(통상 3일) **→ 계약자 동의 후 즉시** 환급
- ♠ (장기 미환급 해소) '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9,482명에게 할증 보험료 86억원(전체의 97.2%)을 환급, 1,312명(2.4억원)이 미환급*된 상태
 - * 미환급 사유 : 연락처 변경, 통화거절, 사망 등 환급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- 미환급 **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**을 '24.8.14.~10.31.까지 **약 2개월간 실시**
- 환급안내 : 보험사에서 연락(문자·유선·이메일) → 연락두절시 주소 확인(행안부)
- 환급방법 : 보험계약자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험회사가 할증보험료 입금

Ⅰ. 추진배경

- □ '24.8.14.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
- ※ '09년부터 금감원,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업무가 법정화
-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가 규정화됨에 따라 그간 보험 업계 TF를 운영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
- □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장기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

Ⅱ. 피해자 구제 강화

- ① (고지기한 단축) 보험사기로 인하여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하는 경우
 - 회사별 자율수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었던 고지기하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히 고지
- ② (고지방법 표준화)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문자·유선 고지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하여 운영
- (고지기준 신설)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
 4회 이상 안내, 문자, 유선, 이메일로 고지방법도 확대하여 안내*
- * 할증보험료 환급 안내가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, URL이 없는 표준안내문으로 고지(붙임2 참조)
- **피해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**된 피해자의 **주소를 확인**(행안부)하여 **재고지** 함으로써 **미고지**의 **발생을 차단**

- ③ (환급절차 표준화)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화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을 하였으나,
 - o '24.8.14. 이후에는 피해자가 화급에 동의한 경우 **지체없이** 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완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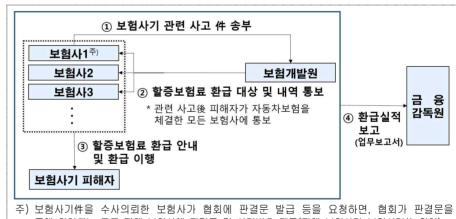
Ⅲ. 향후계획

- □ '24.8.14. 법시행 이후 발생하는 신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강화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사실을 확인하고, 부당한 할증보험료를 화급 처리
- □ '24.8.14. 법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'24.8.14.~'24.10.31.까지 약 2개월간 **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** 캠페인을 실시하여 화급 처리
- '09년부터 **피해자 19.482명**에게 부당 **할증보험료 86억원**(전체의 97.2%)을 환급하였고, **1,312명**(2.4억원)이 **미환급***된 **상태**
- * 미환급 사유 : 연락처 변경, 통화거절, 사망 등 환급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- **환급안내**는 장기 미환급자에게 연락 확대(문자·유선·이메일) → 연락두절시 변경주소 확인(행안부) 순서로 진행
- o 환급방법은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되어 부당 **할증보험료 수령** 동의를 받은 후 화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입금 순서로 진행
- □ 한편, **연락두절** 등으로 화급을 받지 못한 **보험계약자**는 「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*,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**확인**한 후 할증된 **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**하시기를 **당부**드림
 - * ①보험개발원 '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' 또는 ②금융감독원 '**파인'** 홈페이지에서 '잠자는 내 돈 찾기' -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(보험개발원) 조회 시스템 메뉴 클릭

붙임 1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업무 개요

- □ (개요) ^①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件^{*}을 확인하여 보험 개발원에 송부하면 ②보험개발원에서 관련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**내역을 통보**하고, ^③보험사는 피해자에게 **할증보험료를 환급**
 - *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件(기소유예 포함) 및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件 중 가해자 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
- **보험사** 지점 담당자(설계사)가 피해자에게 **전화**를 하여 **할증** 보험료 환급 대상임을 안내하고 환급절차를 진행

※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절차



통해 확인되는 모든 피해 보험사에 판결문 및 사건번호 제공(피해 보험사가 보험사기件 확인)

(참고) 그간의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규모

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86억원 환급

(단위: 백만원, 명, 건)

| 구분 | 일괄 환급* | ′09.6월 ~ ′13년 | ′14년~′19년 | ′20년~′24.3월 | 합계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
| 금액 | 490 | 1,642 | 2,594 | 3,874 | 8,600 |
| 인원 | 908 | 3,746 | 5,952 | 8,876 | 19,482 |
| 계약건수 | 2,971 | 11,073 | 25,175 | 29,204 | 68,423 |

* '06.7월 ~ '09.5월 기간 중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에 대해 일괄 환급 실시('09.6월)

불임 3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방법(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)

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안내

안녕하세요. ○○○ 고객님,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계약과 관련하여. 과거 '20.00.00. 발생한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보험사기로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.

고객님께서는 해당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되었던 부분 만큼 사기발생 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▶ 유의사항

- 사고접수 이후 다른사고가 있으신 경우, 사고특성에 따라 수정된 환급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▶ 환급방법

- 과거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사 콜센터 또는 가입 당시 계약 담당자 (계약 점포)로 연락하시어 환급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가입한 보험사를 모르실 경우,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(FINE)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'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'를 통해 사고 이후 계약한 보험사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, 확인 후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※ 계좌 입금 또는 방문 수령 가능)
- (주의!) 할증보험료 환급을 위한 본 안내문은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URL을 삭제하고 송부드립니다. 만약 URL이 있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1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(http://aipis.kidi.or.kr) 접속 → "과납보험료 환급 신청" 메뉴 클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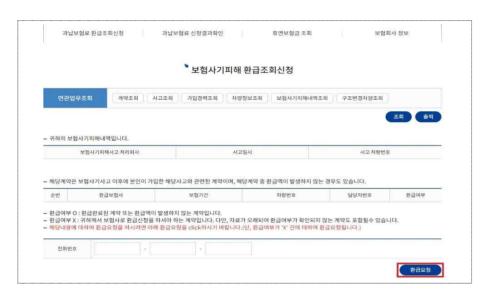
[2] 휴대폰 문자인증,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

| 과납보형료 환급조회신청 | 과납보험료 신청결과확인 | | 휴면보험금 조 | ¢! | 보험회사 정보 |
|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로그인 | | | |
| | ● 개인고 | 백 이범인 | 1यथ | | |
| | 주민등록번호 | | | | |
| | 개인정보 수 | 집 - 이용 - 저 | l공 동의 | | |
| | | | | | |
| 수집 · 이용에 관한 사항 | | _ | | | |
| 수집 · 이용에 관한 사항 1) 수집·이용 목적 - 자동차보험 과념보험로 한급조의 신청확인 및 결 | 과조의 | _ | | | |
| 1) 수집·이용 목적 -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한급조의 신청확인 및 결 2) 수집·이용할 항목 | 과조의 | _ | | | |
| 1) 수집 이용 목적 - 자동자보험 과납보험로 환급조의 신청확인 및 결 2) 수집·이용할 항목 - 개인식행정보: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| | | | | |
| 1) 수집·이용 목적 -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한급조의 신청확인 및 결 2) 수집·이용할 항목 | # 및 전화번호, 이메인 등 | _ | | | |
| 1) 수집·이용 목적 - 자동개보인 개념보험로 환급조의 신청확인 및 결 2) 수집·이용할 항목 - 개인식병원보는 성명, 주민등록번의 등 환급·조의선형을 위해 입력하신 증명서 등 각종 서 자동개보임 개념보험을 환급조확신형을 위해 보 3) 보유·이용기간 | 대로 및 전화변호, 이메일 등 면정보를 조외한 기록 | | | | |
| - 자동차보험 과념보험료 환급조의 신청확인 및 결 2) 수집·이용할 항목 - 개인식법정보: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관립조후시성함을 위해 업대하신 충병서 등 각종 서 - 자동차보험 과념보험료 환급조의산정을 위해 보기 | 대로 및 전화번호, 이메일 등 점정보를 조의한 기록 개월간 위 이뮨목처음 위하여 보유 | 아용됩니다. 3개 | B실 이후에는 위에 기 | 재된 이용 목제과 : | 반전한 사고조사, 분정해결, 인임처리, |
| 1) 수 값이용 의적 - 자동자병원 과당처합로 항급조의 신설되인 및 결 2) 수집:이용할 양쪽 - 개인·내형실보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- 원급조시선원을 위해 되었다라는 상명시 등 각은 사 가동자생인 개압변명을 원급조시선원을 위해 되 3) 보유·이용기간 - 이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업무부터 3 법립한 의부 이행을 위하여 됨2한 변의 내여시인 사 등의를 가부할 권리 및 동의를 가장할 경우에 | 유 및 전화번호, 이메인 등 합청보를 조회한 기록 개월간 위 이윤목적을 위하여 보유 보유·이용됩니다. 불아미역 | | | | |
| 1) 수집·이용 역적 - 자동자보험 과납보험로 환급조의 신청확인 및 결 2) 수집·이용할 양목 - 개인·시행보는 성명, 주민등교변호 등 환급조의신청을 위해 연대하신 흥명사를 극은 사 자동자보임 개입보험을 환경조하신처를 위해 멋 3) 보유·이용기간 - 위 개인정받는 수집·이용에 만한 등의임로보다 3 변경상 경우 이행을 위하여 될요한 등의임로보다 3 변경상 경우 이행을 위하여 될요한 등의임로보다 3 | 유 및 전화번호, 이메인 등 합청보를 조회한 기록 개월간 위 이윤목적을 위하여 보유 보유·이용됩니다. 불아미역 | | | | |
| 1) 수 값이용 의적 - 자동자병원 과당처합로 항급조의 신설되인 및 결 2) 수집:이용할 양쪽 - 개인·내형실보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- 원급조시선원을 위해 되었다라는 상명시 등 각은 사 가동자생인 개압변명을 원급조시선원을 위해 되 3) 보유·이용기간 - 이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업무부터 3 법립한 의부 이행을 위하여 됨2한 변의 내여시인 사 등의를 가부할 권리 및 동의를 가장할 경우에 | 대한 및 전화번호, 이메일 등 점정보를 조의한 기록 개발간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보유 이용됩니다. 불이익 과답보험로 한글조의신청 서비스 것에 등의합니다. | | | | |

③ 환급조회신청 화면에서 "보험사기 피해사실 조회" 버튼 클릭



④ 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 및 보험료 환급 요청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